

反성폭력 학칙 공론화와
학내 성폭력사건
심의 및 징계 결과 공개방안에 관한

공청회

2013.10.8.

pm 7:00

장소: 종101호

연세대학교 제 25 대 총여학생회 THE 好

연세대학교 제25대 총여학생회 THE 好

contents. 학칙 공론화

3	'反성폭력 학칙 공론화'와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결과 공개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준비하며
4	반성폭력 학칙 공론화와 학내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 결과 공개가 왜 필요한가?
12	학내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
14	부록1.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3.8.30. 개정)
18	부록2.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13.9.13. 개정)
22	부록3.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00.10.10. 제정)
25	부록4.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01.3.15 제정)
28	참고자료

공청회 순서.

개회사.	윤소영 총여학생회장
인사말.	고은진 총학생회장
기조발언.	윤소영 총여학생회장
주제발제.	김예은 부총여학생회장

〈 '反성폭력 학칙 공론화'와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결과 공개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준비하며 〉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K대 의대 사건, 그리고 한 명의 학생이 19명의 학생을 강간 및 추행한 사건 등,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에서의 끊임없는 성폭력 사건들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학교의 경우, 타 학교처럼 대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으나, 2013학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학내 성평등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무려 16건, 상담횟수는 831회에 달할 정도로 학내의 많은 학우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이 10%미만인 우리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학내에서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건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내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적 문화'가 잔존하는 대학문화'에 대한 깊은 반성은 물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성폭력 운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에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및 불평등한 성별 위계라는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며,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사회는 여전히 포리자르기식의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학교본부에서 택하는 사건처리 방식은 출교명령, 그리고 제적이라는 징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건 처리는 일회성에 그치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문화에 대한 접근은 매우 미비합니다.) 따라서 제25대 총여학생회는 '구조'와 '문화'의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여 '반성폭력 학칙의 공론화'와 '문화제'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2013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자리는 반성폭력 운동의 한 축으로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내고 지켜냈던 반성폭력 학칙의 공론화를 위한 자리입니다. 더하여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심의 및 징계결과의 공개방안에 대해 논하는 자리입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이것이 성폭력학칙에 따라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건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무엇이 성폭력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야만 했던 불쾌하고 상처 입은 경험을 '피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의 고민을 바탕으로 연세공동체가 가진 성폭력적 문화와 인식을 새롭게 재구성해나가는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연세대학교 제25대 총여학생회 The 好

〈 반성폭력 학칙 공론화와

학내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 결과 공개가 왜 필요한가? 〉

반성폭력 학칙 공론화와 학내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 결과 공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대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은 '반성폭력 학칙'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반성폭력 학칙 제정 배경과 그 역사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학칙 제정의 의의와 본질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학칙 공론화와 학내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 결과 공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내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 결과 공개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도록 하자.

반성폭력 학칙의 역사

1)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의 역사

93년 서울대 신정휴 교수 사건

서울대 신정휴 교수의 성희롱사건¹⁾은 93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93년 8월 "서울대인의 양심에 호소합니다"라는 한 조교의 대자보 공개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신정휴 교수 사건은 남자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자조교가 교수의 데이트 제안을 거절한 후 직장을 잃게 된 일종의 고용 조건형 성희롱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성희롱' 논쟁에 불을 붙였다는 점, 그리고 그 동안 은폐되어왔던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계기하게 된 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제기

당시 서울대 내에 총학생회와 여성모임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학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신정휴 교수 퇴진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신정휴 교수 사건은 교수와 조교라는 권력구조 탓에 재판과정상에서 난항들을 겪게 된다. 이에 학내 공동대책위는 권력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학의 공간적 특수성을 극복하면서 성폭력 사건을 예방, 해결할 수 있는 물적 장치의 필요성을

1)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화학과 우희정 조교가 교수였던 신정휴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1년간 유급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우희정 조교는 관리책임자인 신정휴 교수에게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난처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언동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조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교수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당초 재임용 약속과 다르게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수의 보복적인 행위에 대해 1993년 10월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담당교수, 서울대총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후 4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2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도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다만 4번의 판결 모두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서울대총장과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끝에,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느끼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동대책위는 "성폭력 관련 학칙제정"이라는 방안을 내놓게 된다. 학칙의 적용대상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기 때문에 권력구조로부터 비롯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확산

94년부터 제기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95년을 지나면서 소강기를 맞게 된다. 신정휴 교수의 소송사건이 93년부터 시작하여 98년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었으며, 1년을 단위로 하는 학생단위의 특성 때문에 학내 공동대책위의 활동이 96년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운동이 96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신정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그 영향으로 그 동안 은폐되어왔던 타 대학 내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94년 6월 경희대

미술공학과 교수 성추행 사건으로 학생들의 항의, 농성

94년 6월 한양대 안산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

J모 교수에 의한 성폭행, 학생들의 항의 및 선전 작업으로 가해자가 교수직 사퇴

96년 서울 예술전문대학

강사가 학생 몇몇을 성추행, 강사가 사퇴함으로 마무리

96년 11월 부산교육대학

체육과 교수가 체육과 산행을 하던 중 여학생들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행함.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 진상조사위원회와 대책위 꾸렸으나, 이후 주동한 학생들이 징계를 당함으로 문합

97년 3월 서울대 약학대

구양모 교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대자보를 통해 알려짐. 학생은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을 줄 아느냐'는 등의 폭언을 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 다수의 다른 피해 사례들과 함께 학교 측에 진정을 호소.

연이은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던 중, 97년 2월 국민대 공과대 교수가 한 여학생에게 성폭행한 사실이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공론화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학생들은 강력히 항의하였고, 국민대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사건의 진상파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해 나갔다. 또한 국민대 총여학생회는 타 학교 총여학생회 및 여성모임에 '국민대 성폭력 진상규명과 교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인 여성운동단위들은 각 대학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8개 학교의 여성운동단위가 연대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를 만들게 된다. 이후 여성연대회의는 95년 서울대에서 제기되었던 반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여성연대회의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여성연대회의를 중심으로 97~98년 반성폭력 학칙의 가안이 완성되고, 연대회의에 참석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교 측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마련을 제안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각 대학으로 내려진 교육부의 지침 등의 외부적인 상황과 맞물려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많은 대학에서 관련규정을 만들고, 성폭력 상담소를 따로 개설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2) 연세대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

연세대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시작

많은 학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역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반성폭력 학칙제정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성운동단위를 중심으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었다. 그러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학내 여성주의자들도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중요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당시 12대 총학생회가 학내 여성운동단위를 대상으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제안하면서 학칙제정운동의 흐름을 이어나갔다. 같은 해, 연세학생사회는 연대회의의 제안으로 새터 기간의 성폭력을 예방, 해결하고자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의 반성폭력 담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 건설 및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

한편 그 동안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학교 측은,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내려 받은 후에야 여학생처를 중심으로 학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12대 총학생회 및 연대회의에서는 학칙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칙제정의 모든 과정에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처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있으나 학칙제정과정에서 학생 측의 참여를 보장할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학생이 참여할 경우 사건이 공개될 우려가 크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학교 측의 이유였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성폭력학칙제정위원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고 이는 4.17 연세학생총회의 특별요구안으로 제출되었다. 교육투쟁의 과정에서 성폭력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이 특별요구안으로 채택되었고, 결국 학생, 교수, 교직원이 참여하여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립한다는 합의를 도출해내게 된다.

연대회의는 학교 측에서 제시한 규정의 가안을 받아 1차 수정안을 마련한 후, 1차 수정안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학생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냈다. 최종 수정안을 가지고 학교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몇 차례에 걸친 성폭력 대책위원회 끝에 2000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표되기에 이른다.

다섯 차례에 걸친 반성폭력 학칙의 개정

우리학교 반성폭력 학칙은 제정 이래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쳤다. **학칙의 적용범위**에 있어서의 학칙은 피/가해자 중 일방만이 관계된 사건도 학칙에 의거해 해결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며, 시행세칙 적용 범위의 경우 또한 부속기관에 속한 자, 임시계약직원, 교환학생, 성폭력 사건의 동조자까지 포괄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보호에 관련해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가해자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대리인에 대한 보호 조항 등이 추가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해 나갔다. **가해자 징계**에 대한 개정은 가해자가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나 피해자 인권이 침해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해자의신원을 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과,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접근을 금지하는 것과 가해자에게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성폭력 사건 공개 사과에 관한 조항은 '가해자의 사전 동의'의 조건 대신, '피해자의 사전 동의'의 조건으로 가해자의 실명을 기재한 공개사과문을 작성,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학칙 개정은 '전원출석'해야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개회기준과, 사건 심의에 있어 2/3 동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제까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직접 접수했을 경우에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은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규정이 성폭력 문제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고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잘못된 통념'을 확산시켰으며,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하에 개정을 시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성폭력상담실과 예방교육에 관한 개정은 상담원의 자격 조건의 구체적 명시와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일반상담원'에서 '전문상담원'으로 성폭력 사건을 상담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도록 했으며, 전문 상담원 자격에 '현장 경험이 있는 자, 성폭력예방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의사소통 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1년에 1회'에서 '1학기에 한 시간'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구체화 하였다.

반성폭력 학칙의 의의

1) 학생 자치로 시작된 학칙 제정

앞서 설명했듯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선배들의 값진 노력이 응축되어있는 결과물에 해당한다. 학칙 제정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과거 우리 선배들은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회의를 구성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학교 측과 접촉하여 학생 사회의 요구안을 학칙 제정으로 관철시키고자 했으며, 이러한 학생단위들의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 실제로 학칙 제정운동의 시작단계에서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어진 학칙제정위원회 설립에 대한 요구과정에서도 우리 선배들은 학생서명운동과 설문조사, 자보 및

유인물, 그리고 교양학교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칙제정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이어나갔다. 또한, 반성폭력 학칙의 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선배들의 담과 노력에 힘입어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 일방의 주도 하에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다른 학칙과 달리, 제정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칙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학생 사회의 자치성'이라는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역사성 : 과거와 현재의 표상

학칙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역사성'이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반성폭력 학칙이 역사성을 갖는 까닭은,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시선과 인식수준 등 시대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칙의 변화과정은 곧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기에, 반성폭력 학칙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또한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학칙의 역사성과 연결된다.

3) '성폭력 마주보기'의 시작

반성폭력 학칙은 그동안 대학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내에 만연하던 성폭력을 공동체를 규율하는 '약속'(=규정) 안으로 끌어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크나큰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명문으로 구체화한 것은 사회내에, 그리고 일상 곳곳에서 늘 존재해왔지만 그럼에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성폭력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학내 성폭력 사안의 문제 해결 및 공론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학내 성폭력 근절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반성폭력 학칙의 본질

1) 피해자 중심주의와 그에 대한 오해

반성폭력학칙을 비롯하여 성폭력과 연관된 모든 사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바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하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피해자 중심주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가? 어감상의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 중심주의를 "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에게 '보복'(=강한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는 원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 피해자 중심주의의 개념과 2) 반성폭력 학칙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건적으로 볼 때 '피해자 중심주의'란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관련 절차를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른바 '가짜 피해자'에 의한 사건 날조 및 조작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하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지니는 특수성이다. 성폭력 사건은 여타의 다른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하게 일어나기에 증인이 거의 없고, 강간이 아닌 경우 증거 또한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이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할 점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피해여성이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며 심지어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정조를 지키는 대상'으로 보는 우리들의 사고에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절차 중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비슷한 구조의 또 다른 폭력(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반성폭력학칙의 본질: 공동체의 '파괴'가 아닌 공동체의 '유지 그리고 재생산'

반성폭력학칙의 본질은 공동체를 분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 재생산하는 데 있다. 따라서 반성폭력 학칙이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과 관련된 의식, 그리고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 주로 쓰인 수단은 '침묵'이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혼란이 야기될 경우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기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는 공동체 내에서 숨죽인 채 침묵을 강요당하고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그 결과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아닌 '구조'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강요된 침묵에 의해서는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공동체의 구조가 안고 있는 자체적인 오류나 모순, 결함 등을 공동체 '스스로' 인지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물론 이 과정에서 내려지는 판단의 객관성과 권위가 담보되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법체계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언어로 서술되어 있는 까닭에, 성폭력을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채 단순히 특정 개인이 겪는 경험이나 사적인 영역으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은 공동체 안에서의 피해자의 경험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2차, 3차의 피해를 경험하게 할 위험성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실제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사법 절차 과정에서 2, 3차 가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성폭력 학칙에는 성폭력을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반성폭력학칙이 성폭력을 야기한 우리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외에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반성폭력학칙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문

화의 생성, 변화, 소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공동체 내의 올바른 성 인식/문화를 형성, 확산해나감으로써 공동체는 내실 면에서 한층 더 성숙, 발전하게 된다.

실제적인 제도의 운영 면에서 볼 때 반성폭력학칙은 공동체의 '파괴'가 아닌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법절차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리어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거나 오명을 씌움으로써 가해자를 공동체로부터 분리, 배제시키는 데 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성폭력학칙을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경우,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사건을 제대로 마주하여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도울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반성폭력학칙을 통한 공동체 내부의 해결은 가해자에게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사건 처리 이후에도 학내에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해야만 하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사법 절차(여기서는 형법)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의 근본적인 해결을 꾀할 수 있다.

사건 공개의 필요성

‘나, 너’가 아닌 ‘우리’의 문제

이전까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도덕적,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은연중에 전제된 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대학 내에 만연해 있던 성폭력이 구체적인 사건의 형태로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학생 사회는 당황스러움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학생사회 내에 성폭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곤 했다. 이 방법은 성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장점은 있었으나, 성폭력의 발생을 공동체 전반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의 사건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은 가해자 개인, 일방의 결함에서 기인한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있기에 공적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이다. 성폭력을 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 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있는 성폭력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제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무엇이 성폭력이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우리의 사고체계 및 문화 중 실제로 성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사건공개의 필요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과 제기되었다. 학내 구성원들은 학내에서 발생했고 대책위에 회부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알아야만 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학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나의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되었는지, 혹은 내가 당한 것이 성폭력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건 공개를 통해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성폭력'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학내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폭력의 위험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사전적인 예방의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생존해 나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요컨대 사건 공개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전달함으로써 학내 성폭력의 상당 부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학내 성폭력의 종국적인 근절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무리

반성폭력 학칙의 공론화가 문제 해결의 종착점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내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반성폭력 학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반성폭력 학칙도 결국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반성폭력 학칙의 존재가 학교가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이 계속되는 현 실태에 대해 단순히 '반성폭력 학칙을 잘 알고 지키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학내 성폭력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학칙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성폭력 학칙은 인해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침묵하지 않도록 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해결의 의무가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듯 반성폭력 학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성폭력 학칙의 공론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반성폭력 학칙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나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는 등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학칙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반성폭력 운동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보다 나은 연세공동체를 위하여 반성폭력 학칙의 존재를 알리고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만이 아닌 교육권의 확보와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구성원 중심의 학칙으로 더욱 변모시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다. 더 나아가 학생 사회가 반성폭력 학칙의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덜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생존과 회복의 가능성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성찰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려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버젓이 실재하는 가부장적 권력구조와 성폭력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가십거리를 위해 사건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함으로써 순전히 '처벌'에만 국한되지 않는, 실질적인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 학내 성폭력 사건 심의 및 징계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 〉

지난 2001년 제정되어 네 차례의 개정을 거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 10항과 1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징계 및 조치)

⑩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할 수 있다.

⑪위원회는 규정 제5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반성폭력 학칙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학칙의 존재가치가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된 사건공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건 공개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폭력대책위원회 내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내용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과 모든 처리 및 징계절차가 종결된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후자가 바로 사건공개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하에 해결된 사건의 심의 및 징계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폭력,

이제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회화화되거나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닌 척/안 그런 척"하고 무작정 공공 감추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性)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그 금기의 정도가 매우 강하여, 공적인 자리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지배해왔습니다. 사전적인 예방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대외적으로 이슈가 불거지면 그때서야 대책을 마련하느라 급급하고, 역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통을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연고전 당시 우리 학교 측의 전광판 영상 중에서는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일로 물의를 빚었던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직한 것을 조롱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이슈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학교의 허물로 작용하는, 말 그대로 '추문'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여, 학내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발생을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 추락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을 상당 부분 삭제하는 행위이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가 성폭력이 없는 공간이라는 착각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대학,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지만 해당 개인/조직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봐 감춰왔을 뿐입니다. 사건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묵도하는 것만으로도 당장은 괴롭고 뼈아픈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것은 사건 공개로 인한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의 추락이 아니라 만연해 있는 학내 성폭력으로부터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추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공간인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는 학교"가 아닌, "제대로 해결되는 성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는 학교"로 전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공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건공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학내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3.08.30

제정일: 2000.10.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②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7. 12. 2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①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평등센터 <개정 2013.08.30>

제6조 (설치)

학생복지처 내에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8.30, 2010.06.07,

2007.12.21.>

제7조 (구성)

-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 2013.08.30>
- ② 센터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8조 (업무)

-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8.30>
1.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08.30>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개정 2013.08.30>
 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5.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개정 2013.08.30>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8.30>

제10조 (구성)

- ①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성평등센터소장, 대학원부원장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4인(젠더 관련 전공교수 1인 포함),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교수위원(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 시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해당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30, 2010.12.1, 2010. 6. 7, 2007. 12. 21>
-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
- ⑤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 수를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개정 2013.08.30>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신설 2013.08.30>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8.30>
- ② 성폭력 사건 처리 회의(이하 "사건처리")는 해당위원 전원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 및 사건처리 이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사건처리에 참석이 불가능한 해당위원의 사전서면결의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08.30, 2007. 12. 21.>
- ③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 ① 센터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 ②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센터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3.08.30>
- ③<삭제>
- ④ 센터는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위원장은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5조 (심의·의결)

-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④센터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6조 (징계 및 조치)

-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7조 (경비)

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삭제 2007. 12. 21.>
-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4)(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절,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1호, 제5호(신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2.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2013.09.13.

제정일: 2001.03.15.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강사,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 등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해자, 가해자 또는 동조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개정 2013.09.13>

제3조 ()

<삭제 2013.09.13>

제4조 (전문상담원의 자격)

성평등센터(이하 "센터")의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①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
- ② 성폭력 상담 현장경험이 있는 자
- ③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의사소통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

[본조 개정 2013.09.13]

제5조 (전문상담원의 수)

센터에는 1인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전문상담원 및 객원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제6조 (성폭력 예방교육)

- ①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이상 실시한다.
- 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3.09.13>
 1. 성폭력 정의
 2.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6.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정 제10조의 당연직 위원 4인, 교수평의회가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성평등센터 소장(이하 "소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총장이 임명한 젠더 관련 전공교수 1인,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개정 2013.09.13>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07. 12. 21.>

② <삭제 2007. 12. 21.>

③ <삭제 2013. 09. 13.>

④ 사건 심의는 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50%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9.13.>

제9조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3.09.13>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 (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센터는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개정 2013.09.13>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이 추천하는 동성의 객원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개정 2013.09.13, 2010. 6. 7.>

③ 전문상담원은 상담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복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전문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9.13>

⑥ 소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3>

⑦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3.09.13>

제12조 (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①<삭제 2007. 12. 21.>
- ②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3.09.13>
- ③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참고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④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3>
- ⑥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의미함),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개정 2013.09.13>
- ⑦<삭제 2013.09.13>
- ⑧제6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제13조 (징계 및 조치)

- ①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기재한 공개사과문을 작성, 공표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③공개사과는 연세춘추, 센터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 비실명으로 한다. <개정 2013.09.13>
- ④ 학생복지처는 가해자 비실명으로 사건 경위와 처벌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전 연세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⑤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⑥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⑦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⑨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⑩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⑪위원회는 규정 제5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재심의)

- ①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 ④사건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이 있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당 연직 위원들과 위원장이 새로이 추천한 3명의 교수위원(직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노조위원장)이 새로이 추천한 3명의 직원,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가 새로이 추천한 각 1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09.13>

제15조 (기록 및 자료보존)

- ①센터는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②센터는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개정 2013.09.13>

부칙

-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삭제 2007. 12. 21.>
- (3)(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삭제>, 제12조 제1항<삭제>,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삭제),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삭제), 제4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삭제),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10.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당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록4.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1.3.15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학·재학(휴학·휴학 포함)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 이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 ⑥ 상담실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 ⑦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1인으로 한다. 단 교수, 직원 및 학생위원 3인은 정기회의와 각각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同性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제⑥, 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학생이 중심되는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연세인 공청회 자료집, 연세대, 2000
- 학내 성폭력 근절! 반성폭력학칙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경상대, 2000
-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연세대, 2003
-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3
-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2007
-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김보명, 2008
- 성폭력에 맞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 현장활동 반성폭력 자료집,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2011